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19813
-------------	-------

발의연월일 : 2019. 4. 15.

발의자 : 윤호중 · 이원욱 · 윤일규  
            강훈식 · 윤관석 · 변재일  
            이재정 · 김현권 · 김태년  
            윤영일 · 이학영 · 박재호  
            맹성규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후 건설업 종사자는 줄곧 ‘건설업자’로 불려왔음. 그런데 ‘업자’라는 표현이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업자와 결탁해 공금을 빼돌리다’란 예시가 제시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짐. 작년 기준 건설업 종사자는 130여만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안 제35조의2제1항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주택건설업자”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에게”를 “건설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에”를 “건설사업자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붙박 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u>건설업자에</u>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를 조사할 수 있다.</p>	<p>③ ----- ----- <u>건설사업자에</u>----- ----- ----- ----- -----.</p>
--	--